#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코로나 19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시 마스크 미착용
- 기침 및 인후통 등 유증상 시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로 체온 측정 온도가 37.5도 이상 시
- 체온측정 및 기타 예방절차 불응 시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견본주택의 개방 여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대중교통(2호선 센텀시티역 2번출구, 벡스코역 8번출구, 동해선 벡스코역 3번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차량 이용시 벡스코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와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견본주택(051-731-1113)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2-건축과-분양신고-4호(2022.08.31.) 분양신고 처리 사항을 알립니다.

■ 본 건축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 (2021-건축과-신축허가-52)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2.09.01.)**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개 모집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8.31.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8.31. 광고일과 다름)**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군별 2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entum.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계약금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
| 일시 | **2022년 09월 06일(화) 09:00 ~ 17:30** | **2022년 09월 13일(화) 16:00 이후** | **2022년 09월 14일(수) ~ 09월 16일(금) (10:00~16:00)**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br>(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br>(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계약 |
| **장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 PC : www.applyhome.co.kr<br>- 스마트폰앱 |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8-1번지)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오피스텔 | ○ | ○ | ○ | ○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2-건축과-분양신고-4호(2022.08.31.)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2021-건축과-신축허가-52호(2022.05.19.)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29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행위탁자-(주)센트럴시티, 시행수탁자-신한자산신탁(주)**

■ **분양사업자 : 신한자산신탁(주)**

■ **분양대행사 : 지우알엔씨(주)**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신탁업자(시행수탁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신한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 준공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1,665.00㎡**
- **건축물 연면적 : 82,534.1037㎡ (오피스텔 : 74,972.4100㎡)**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3층 ~ 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지하1층~지상7층(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지상1층 ~ 지상37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3층 ~ 지상37층 4개동, 오피스텔 총 447실**

• **주차대수 : 총 586대 (오피스텔 : 537대)**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진도등급 (Ⅷ등급-0.291g)입니다.**

| 지역구역계수(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계수($I_E$) | 내진설계범주 | 건물 중요도 | 반응수정계수(R) |
|---|---|---|---|---|---|
| 0.18 | Se | 1.2 | D | 중요도(1) | 4.0 |

• 본 건축물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등급 Ⅷ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91(g)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건축물 층별 용도

| 구분 | 용 도 |
|---|---|
| 지하3층~지하1층 | 주차장, 휀룸, 제연휀룸, 지하저수조, 발전기실, 전기실, 독서실, 세대창고, 주민편의시설(골프연습장), 무인택배함, 관리실, 독서실 |
| 지상1층~지상7층 | 감시제어반실, 통신실, 오피스텔, 홀, 근린생활시설, 휘트니스, 패밀리 스포츠존, 안내데스크 |
| 지상8층~지상19층 | 오피스텔 |
| 지상20층 | 피난안전구역, 제연휀룸, 저수조 |
| 지상21층~지상37층 | 오피스텔 |
| 지상38층 | 제연휀룸, 통신실 |
| 옥탑, 옥탑지붕 | EV 기계실, 옥상수조, 인명구조공간 |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 군 | 타입 | 공급호실(수) |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계 | | | |
| 1 | 61A | 12 | 61.8651 | 37.0209 | 98.8860 | 39.2845 | 138.1705 | 17.7603 |
| | 61B | 11 | 61.8882 | 37.5230 | 99.4112 | 39.2990 | 138.7102 | 17.7670 |
| 2 | 76A | 107 | 76.8308 | 31.6679 | 108.4987 | 48.7877 | 157.2864 | 22.0567 |
| 3 | 84A | 210 | 84.9902 | 34.4401 | 119.4303 | 53.9689 | 173.3992 | 24.3991 |
| 4 | 84B | 107 | 84.9944 | 34.3526 | 119.3470 | 53.9716 | 173.3186 | 24.4003 |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은「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으로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1호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2022.08.31.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 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군 | 타입 | 금회 공급호실(주) | 신청유형 호실(주) | | 비고 |
|---|---|---|---|---|---|
| | | | 거주자 우선공급(20%) | 일반공급호실 | |
| 1 | 61A | 12 | 2 | 10 | ※ 주민등록등본 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br>※ 전산추첨을 통해 각 군별 타입, 층,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배정 |
| | 61B | 11 | 2 | 9 | |
| 2 | 76A | 107 | 21 | 86 | |
| 3 | 84A | 210 | 42 | 168 | |
| 4 | 84B | 107 | 21 | 86 | |

**■ 공통사항**

• 본 오피스텔은 총 447실 5개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본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의 상이 할수 있으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공급계약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인지세,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내에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전체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체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골프연습장, 독서실, 창고 등)은 실별 전용면적의 합계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의 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단, 위치 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T.051-731-1113)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측량)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하여야 하며, 잔금은 실입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날)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아래 납부일정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2차계약금 납부일자 경과 후 납부 시 연체가 적용되며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하수관거 등) 및 주변환경(체육시설 및 수변공원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발생, 냄새, 사생활침해 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공사, 시행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필요 없음.)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체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당첨자 및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부 정책으로 변경된 각종 세금 관련 문제는 계약 시 세금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에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공사 현황은 http://www.hillstate-centum.c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군 | 타입 | 라인 | 층 | 호실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 | | | | | | | | 계약시 | 30일내 | 2023.03.16 | 2023.09.18 | 2024.03.18 | 2024.09.19 | 2025.03.17 | 2025.09.16 | 입주시 |
| 1 | 61A | 104동2호 | 8층 | 1 | 219,727,200 | 292,248,000 | 29,224,800 | 541,200,000 | 10,000,000 | 44,120,000 | 54,120,000 | 54,120,000 | 54,120,000 | 54,120,000 | 54,120,000 | 54,120,000 | 162,360,000 |
| | | | 9층 | 1 | 222,000,800 | 295,272,000 | 29,527,200 | 546,800,000 | 10,000,000 | 44,680,000 | 54,680,000 | 54,680,000 | 54,680,000 | 54,680,000 | 54,680,000 | 54,680,000 | 164,040,000 |
| | | | 10~11층 | 2 | 224,274,400 | 298,296,000 | 29,829,600 | 552,400,000 | 10,000,000 | 45,240,000 | 55,240,000 | 55,240,000 | 55,240,000 | 55,240,000 | 55,240,000 | 55,240,000 | 165,720,000 |
| | | | 12~13층 | 2 | 226,548,000 | 301,320,000 | 30,132,000 | 558,000,000 | 10,000,000 | 4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 | | 14~15층 | 2 | 228,821,600 | 304,344,000 | 30,434,400 | 563,600,000 | 10,000,000 | 4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169,080,000 |
| | | | 16~17층 | 2 | 231,054,600 | 307,314,000 | 30,731,400 | 569,100,000 | 10,000,000 | 4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56,910,000 | 170,730,000 |
| | | | 18~19층 | 2 | 233,328,200 | 310,338,000 | 31,033,800 | 574,700,000 | 10,000,000 | 4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57,470,000 | 172,410,000 |
| | 61B | 104동1호 | 9층 | 1 | 228,821,600 | 304,344,000 | 30,434,400 | 563,600,000 | 10,000,000 | 4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56,360,000 | 169,080,000 |
| | | | 10~11층 | 2 | 231,135,800 | 307,422,000 | 30,742,200 | 569,300,000 | 10,000,000 | 46,930,000 | 56,930,000 | 56,930,000 | 56,930,000 | 56,930,000 | 56,930,000 | 56,930,000 | 170,790,000 |
| | | | 12~13층 | 2 | 233,490,600 | 310,554,000 | 31,055,400 | 575,100,000 | 10,000,000 | 47,510,000 | 57,510,000 | 57,510,000 | 57,510,000 | 57,510,000 | 57,510,000 | 57,510,000 | 172,530,000 |
| | | | 14~15층 | 2 | 235,804,800 | 313,632,000 | 31,363,200 | 580,800,000 | 10,000,000 | 48,080,000 | 58,080,000 | 58,080,000 | 58,080,000 | 58,080,000 | 58,080,000 | 58,080,000 | 174,240,000 |
| | | | 16~17층 | 2 | 238,159,600 | 316,764,000 | 31,676,400 | 586,600,000 | 10,000,000 | 48,660,000 | 58,660,000 | 58,660,000 | 58,660,000 | 58,660,000 | 58,660,000 | 58,660,000 | 175,980,000 |
| | | | 18~19층 | 2 | 240,514,400 | 319,896,000 | 31,989,600 | 592,400,000 | 10,000,000 | 49,240,000 | 59,240,000 | 59,240,000 | 59,240,000 | 59,240,000 | 59,240,000 | 59,240,000 | 177,720,000 |
| 2 | 76A | 101동4호 | 2층 | 1 | 251,638,800 | 334,692,000 | 33,469,200 | 619,800,000 | 10,000,000 | 51,980,000 | 61,980,000 | 61,980,000 | 61,980,000 | 61,980,000 | 61,980,000 | 61,980,000 | 185,940,000 |
| | | | 3층 | 1 | 254,359,000 | 338,310,000 | 33,831,000 | 626,500,000 | 10,000,000 | 52,650,000 | 62,650,000 | 62,650,000 | 62,650,000 | 62,650,000 | 62,650,000 | 62,650,000 | 187,950,000 |
| | | | 4층 | 1 | 257,119,800 | 341,982,000 | 34,198,200 | 633,300,000 | 10,000,000 | 53,330,000 | 63,330,000 | 63,330,000 | 63,330,000 | 63,330,000 | 63,330,000 | 63,330,000 | 189,990,000 |
| | | | 5층 | 1 | 259,840,000 | 345,600,000 | 34,560,000 | 640,000,000 | 10,000,000 | 5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64,000,000 | 192,000,000 |
| | | | 6~7층 | 2 | 265,321,000 | 352,890,000 | 35,289,000 | 653,500,000 | 10,000,000 | 55,350,000 | 65,350,000 | 65,350,000 | 65,350,000 | 65,350,000 | 65,350,000 | 65,350,000 | 196,050,000 |
| | | | 8~9층 | 2 | 268,041,200 | 356,508,000 | 35,650,800 | 660,200,000 | 10,000,000 | 56,020,000 | 66,020,000 | 66,020,000 | 66,020,000 | 66,020,000 | 66,020,000 | 66,020,000 | 198,060,000 |
| | | | 10~11층 | 2 | 270,761,400 | 360,126,000 | 36,012,600 | 666,900,000 | 10,000,000 | 56,690,000 | 66,690,000 | 66,690,000 | 66,690,000 | 66,690,000 | 66,690,000 | 66,690,000 | 200,070,000 |
| | | | 12~13층 | 2 | 273,522,200 | 363,798,000 | 36,379,800 | 673,700,000 | 10,000,000 | 5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202,110,000 |
| | | | 14~15층 | 2 | 276,242,400 | 367,416,000 | 36,741,600 | 680,400,000 | 10,000,000 | 58,040,000 | 68,040,000 | 68,040,000 | 68,040,000 | 68,040,000 | 68,040,000 | 68,040,000 | 204,120,000 |
| | | | 16~17층 | 2 | 279,003,200 | 371,088,000 | 37,108,800 | 687,200,000 | 10,000,000 | 58,720,000 | 68,720,000 | 68,720,000 | 68,720,000 | 68,720,000 | 68,720,000 | 68,720,000 | 206,160,000 |
| | | | 18~19층 | 2 | 281,723,400 | 374,706,000 | 37,470,600 | 693,900,000 | 10,000,000 | 59,390,000 | 69,390,000 | 69,390,000 | 69,390,000 | 69,390,000 | 69,390,000 | 69,390,000 | 208,170,000 |
| | | | 21~24층 | 4 | 287,204,400 | 381,996,000 | 38,199,600 | 707,400,000 | 10,000,000 | 60,740,000 | 70,740,000 | 70,740,000 | 70,740,000 | 70,740,000 | 70,740,000 | 70,740,000 | 212,220,000 |
| | | | 25~28층 | 4 | 289,924,600 | 385,614,000 | 38,561,400 | 714,100,000 | 10,000,000 | 61,410,000 | 71,410,000 | 71,410,000 | 71,410,000 | 71,410,000 | 71,410,000 | 71,410,000 | 214,230,000 |
| | | | 29~32층 | 4 | 292,644,800 | 389,232,000 | 38,923,200 | 720,800,000 | 10,000,000 | 62,080,000 | 72,080,000 | 72,080,000 | 72,080,000 | 72,080,000 | 72,080,000 | 72,080,000 | 216,24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33~36층 | 4 | 295,405,600 | 392,904,000 | 39,290,400 | 727,600,000 | 10,000,000 | 62,760,000 | 72,760,000 | 72,760,000 | 72,760,000 | 72,760,000 | 72,760,000 | 72,760,000 | 218,280,000 |
| | | | 최상층 | 1 | 298,125,800 | 396,522,000 | 39,652,200 | 734,300,000 | 10,000,000 | 63,430,000 | 73,430,000 | 73,430,000 | 73,430,000 | 73,430,000 | 73,430,000 | 73,430,000 | 220,290,000 |
| | | 102동4호<br>103동4호 | 1층 | 2 | 251,192,200 | 334,098,000 | 33,409,800 | 618,700,000 | 10,000,000 | 51,870,000 | 61,870,000 | 61,870,000 | 61,870,000 | 61,870,000 | 61,870,000 | 61,870,000 | 185,610,000 |
| | | | 2층 | 2 | 256,754,400 | 341,496,000 | 34,149,600 | 632,400,000 | 10,000,000 | 53,240,000 | 63,240,000 | 63,240,000 | 63,240,000 | 63,240,000 | 63,240,000 | 63,240,000 | 189,720,000 |
| | | | 3층 | 2 | 259,555,800 | 345,222,000 | 34,522,200 | 639,300,000 | 10,000,000 | 5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63,930,000 | 191,790,000 |
| | | | 4층 | 2 | 262,357,200 | 348,948,000 | 34,894,800 | 646,200,000 | 10,000,000 | 5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64,620,000 | 193,860,000 |
| | | | 5층 | 2 | 265,158,600 | 352,674,000 | 35,267,400 | 653,100,000 | 10,000,000 | 55,310,000 | 65,310,000 | 65,310,000 | 65,310,000 | 65,310,000 | 65,310,000 | 65,310,000 | 195,930,000 |
| | | | 6~7층 | 4 | 270,720,800 | 360,072,000 | 36,007,200 | 666,800,000 | 10,000,000 | 56,680,000 | 66,680,000 | 66,680,000 | 66,680,000 | 66,680,000 | 66,680,000 | 66,680,000 | 200,040,000 |
| | | | 8~9층 | 4 | 273,522,200 | 363,798,000 | 36,379,800 | 673,700,000 | 10,000,000 | 5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67,370,000 | 202,110,000 |
| | | | 10~11층 | 4 | 276,323,600 | 367,524,000 | 36,752,400 | 680,600,000 | 10,000,000 | 58,060,000 | 68,060,000 | 68,060,000 | 68,060,000 | 68,060,000 | 68,060,000 | 68,060,000 | 204,180,000 |
| | | | 12~13층 | 4 | 279,084,400 | 371,196,000 | 37,119,600 | 687,400,000 | 10,000,000 | 58,740,000 | 68,740,000 | 68,740,000 | 68,740,000 | 68,740,000 | 68,740,000 | 68,740,000 | 206,220,000 |
| | | | 14~15층 | 4 | 281,885,800 | 374,922,000 | 37,492,200 | 694,300,000 | 10,000,000 | 5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69,430,000 | 208,290,000 |
| | | | 16~17층 | 4 | 284,687,200 | 378,648,000 | 37,864,800 | 701,200,000 | 10,000,000 | 60,120,000 | 70,120,000 | 70,120,000 | 70,120,000 | 70,120,000 | 70,120,000 | 70,120,000 | 210,360,000 |
| | | | 18~19층 | 4 | 287,488,600 | 382,374,000 | 38,237,400 | 708,100,000 | 10,000,000 | 60,810,000 | 70,810,000 | 70,810,000 | 70,810,000 | 70,810,000 | 70,810,000 | 70,810,000 | 212,430,000 |
| | | | 21~24층 | 8 | 293,050,800 | 389,772,000 | 38,977,200 | 721,800,000 | 10,000,000 | 6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72,180,000 | 216,540,000 |
| | | | 25~28층 | 8 | 295,852,200 | 393,498,000 | 39,349,800 | 728,700,000 | 10,000,000 | 62,870,000 | 72,870,000 | 72,870,000 | 72,870,000 | 72,870,000 | 72,870,000 | 72,870,000 | 218,610,000 |
| | | | 29~32층 | 8 | 298,653,600 | 397,224,000 | 39,722,400 | 735,600,000 | 10,000,000 | 63,560,000 | 73,560,000 | 73,560,000 | 73,560,000 | 73,560,000 | 73,560,000 | 73,560,000 | 220,680,000 |
| | | | 33~36층 | 8 | 301,414,400 | 400,896,000 | 40,089,600 | 742,400,000 | 10,000,000 | 64,240,000 | 74,240,000 | 74,240,000 | 74,240,000 | 74,240,000 | 74,240,000 | 74,240,000 | 222,720,000 |
| | | | 최상층 | 2 | 304,215,800 | 404,622,000 | 40,462,200 | 749,300,000 | 10,000,000 | 64,930,000 | 74,930,000 | 74,930,000 | 74,930,000 | 74,930,000 | 74,930,000 | 74,930,000 | 224,790,000 |
| 3 | 84A | 101동1호 | 2층 | 1 | 305,149,600 | 405,864,000 | 40,586,400 | 751,600,000 | 10,000,000 | 65,160,000 | 75,160,000 | 75,160,000 | 75,160,000 | 75,160,000 | 75,160,000 | 75,160,000 | 225,480,000 |
| | | | 3층 | 1 | 308,478,800 | 410,292,000 | 41,029,200 | 759,800,000 | 10,000,000 | 65,980,000 | 75,980,000 | 75,980,000 | 75,980,000 | 75,980,000 | 75,980,000 | 75,980,000 | 227,940,000 |
| | | | 4층 | 1 | 311,808,000 | 414,720,000 | 41,472,000 | 768,000,000 | 10,000,000 | 6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230,400,000 |
| | | | 5층 | 1 | 315,096,600 | 419,094,000 | 41,909,400 | 776,100,000 | 10,000,000 | 67,610,000 | 77,610,000 | 77,610,000 | 77,610,000 | 77,610,000 | 77,610,000 | 77,610,000 | 232,830,000 |
| | | | 6~7층 | 2 | 321,755,000 | 427,950,000 | 42,795,000 | 792,500,000 | 10,000,000 | 69,250,000 | 79,250,000 | 79,250,000 | 79,250,000 | 79,250,000 | 79,250,000 | 79,250,000 | 237,750,000 |
| | | | 8~9층 | 2 | 325,043,600 | 432,324,000 | 43,232,400 | 800,600,000 | 10,000,000 | 70,060,000 | 80,060,000 | 80,060,000 | 80,060,000 | 80,060,000 | 80,060,000 | 80,060,000 | 240,180,000 |
| | | | 10~11층 | 2 | 328,372,800 | 436,752,000 | 43,675,200 | 808,800,000 | 10,000,000 | 7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80,880,000 | 242,640,000 |
| | | | 12~13층 | 2 | 331,702,000 | 441,180,000 | 44,118,000 | 817,000,000 | 10,000,000 | 7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245,100,000 |
| | | | 14~15층 | 2 | 334,990,600 | 445,554,000 | 44,555,400 | 825,100,000 | 10,000,000 | 72,510,000 | 82,510,000 | 82,510,000 | 82,510,000 | 82,510,000 | 82,510,000 | 82,510,000 | 247,530,000 |
| | | | 16~17층 | 2 | 338,319,800 | 449,982,000 | 44,998,200 | 833,300,000 | 10,000,000 | 73,330,000 | 83,330,000 | 83,330,000 | 83,330,000 | 83,330,000 | 83,330,000 | 83,330,000 | 249,990,000 |
| | | | 18~19층 | 2 | 341,649,000 | 454,410,000 | 45,441,000 | 841,500,000 | 10,000,000 | 74,150,000 | 84,150,000 | 84,150,000 | 84,150,000 | 84,150,000 | 84,150,000 | 84,150,000 | 252,450,000 |
| | | | 21~24층 | 4 | 348,266,800 | 463,212,000 | 46,321,200 | 857,800,000 | 10,000,000 | 75,780,000 | 85,780,000 | 85,780,000 | 85,780,000 | 85,780,000 | 85,780,000 | 85,780,000 | 257,340,000 |
| | | | 25~28층 | 4 | 351,596,000 | 467,640,000 | 46,764,000 | 866,000,000 | 10,000,000 | 7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86,600,000 | 259,800,000 |
| | | | 29~32층 | 4 | 354,925,200 | 472,068,000 | 47,206,800 | 874,200,000 | 10,000,000 | 77,420,000 | 87,420,000 | 87,420,000 | 87,420,000 | 87,420,000 | 87,420,000 | 87,420,000 | 262,260,000 |
| | | | 33~36층 | 4 | 358,213,800 | 476,442,000 | 47,644,200 | 882,300,000 | 10,000,000 | 78,230,000 | 88,230,000 | 88,230,000 | 88,230,000 | 88,230,000 | 88,230,000 | 88,230,000 | 264,690,000 |
| | | | 최상층 | 1 | 361,543,000 | 480,870,000 | 48,087,000 | 890,500,000 | 10,000,000 | 79,050,000 | 89,050,000 | 89,050,000 | 89,050,000 | 89,050,000 | 89,050,000 | 89,050,000 | 267,150,000 |
| | | 101동3호 | 2층 | 1 | 291,264,400 | 387,396,000 | 38,739,600 | 717,400,000 | 10,000,000 | 61,740,000 | 71,740,000 | 71,740,000 | 71,740,000 | 71,740,000 | 71,740,000 | 71,740,000 | 215,220,000 |
| | | | 3층 | 1 | 294,431,200 | 391,608,000 | 39,160,800 | 725,200,000 | 10,000,000 | 62,520,000 | 72,520,000 | 72,520,000 | 72,520,000 | 72,520,000 | 72,520,000 | 72,520,000 | 217,560,000 |
| | | | 4층 | 1 | 297,598,000 | 395,820,000 | 39,582,000 | 733,000,000 | 10,000,000 | 6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73,300,000 | 219,900,000 |
| | | | 5층 | 1 | 300,764,800 | 400,032,000 | 40,003,200 | 740,800,000 | 10,000,000 | 64,080,000 | 74,080,000 | 74,080,000 | 74,080,000 | 74,080,000 | 74,080,000 | 74,080,000 | 222,240,000 |
| | | | 6~7층 | 2 | 307,098,400 | 408,456,000 | 40,845,600 | 756,400,000 | 10,000,000 | 65,640,000 | 75,640,000 | 75,640,000 | 75,640,000 | 75,640,000 | 75,640,000 | 75,640,000 | 226,920,000 |
| | | | 8~9층 | 2 | 310,265,200 | 412,668,000 | 41,266,800 | 764,200,000 | 10,000,000 | 66,420,000 | 76,420,000 | 76,420,000 | 76,420,000 | 76,420,000 | 76,420,000 | 76,420,000 | 229,260,000 |
| | | | 10~11층 | 2 | 313,432,000 | 416,880,000 | 41,688,000 | 772,000,000 | 10,000,000 | 6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77,200,000 | 231,600,000 |
| | | | 12~13층 | 2 | 316,598,800 | 421,092,000 | 42,109,200 | 779,800,000 | 10,000,000 | 6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233,940,000 |
| | | | 14~15층 | 2 | 319,765,600 | 425,304,000 | 42,530,400 | 787,600,000 | 10,000,000 | 68,760,000 | 78,760,000 | 78,760,000 | 78,760,000 | 78,760,000 | 78,760,000 | 78,760,000 | 236,280,000 |
| | | | 16~17층 | 2 | 322,932,400 | 429,516,000 | 42,951,600 | 795,400,000 | 10,000,000 | 69,540,000 | 79,540,000 | 79,540,000 | 79,540,000 | 79,540,000 | 79,540,000 | 79,540,000 | 238,620,000 |
| | | | 18~19층 | 2 | 326,099,200 | 433,728,000 | 43,372,800 | 803,200,000 | 10,000,000 | 70,320,000 | 80,320,000 | 80,320,000 | 80,320,000 | 80,320,000 | 80,320,000 | 80,320,000 | 240,96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21~24층 | 4 | 332,432,800 | 442,152,000 | 44,215,200 | 818,800,000 | 10,000,000 | 71,880,000 | 81,880,000 | 81,880,000 | 81,880,000 | 81,880,000 | 81,880,000 | 81,880,000 | 245,640,000 |
| | | | 25~28층 | 4 | 335,599,600 | 446,364,000 | 44,636,400 | 826,600,000 | 10,000,000 | 72,660,000 | 82,660,000 | 82,660,000 | 82,660,000 | 82,660,000 | 82,660,000 | 82,660,000 | 247,980,000 |
| | | | 29~32층 | 4 | 338,766,400 | 450,576,000 | 45,057,600 | 834,400,000 | 10,000,000 | 73,440,000 | 83,440,000 | 83,440,000 | 83,440,000 | 83,440,000 | 83,440,000 | 83,440,000 | 250,320,000 |
| | | | 33~36층 | 4 | 341,933,200 | 454,788,000 | 45,478,800 | 842,200,000 | 10,000,000 | 74,220,000 | 84,220,000 | 84,220,000 | 84,220,000 | 84,220,000 | 84,220,000 | 84,220,000 | 252,660,000 |
| | | | 최상층 | 1 | 345,100,000 | 459,000,000 | 45,900,000 | 850,000,000 | 10,000,000 | 7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85,000,000 | 255,000,000 |
| | | 102동1호<br>103동1호 | 2층 | 2 | 311,402,000 | 414,180,000 | 41,418,000 | 767,000,000 | 10,000,000 | 6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76,700,000 | 230,100,000 |
| | | | 3층 | 2 | 314,771,800 | 418,662,000 | 41,866,200 | 775,300,000 | 10,000,000 | 67,530,000 | 77,530,000 | 77,530,000 | 77,530,000 | 77,530,000 | 77,530,000 | 77,530,000 | 232,590,000 |
| | | | 4층 | 2 | 318,141,600 | 423,144,000 | 42,314,400 | 783,600,000 | 10,000,000 | 68,360,000 | 78,360,000 | 78,360,000 | 78,360,000 | 78,360,000 | 78,360,000 | 78,360,000 | 235,080,000 |
| | | | 5층 | 2 | 321,552,000 | 427,680,000 | 42,768,000 | 792,000,000 | 10,000,000 | 69,200,000 | 79,200,000 | 79,200,000 | 79,200,000 | 79,200,000 | 79,200,000 | 79,200,000 | 237,600,000 |
| | | | 6~7층 | 4 | 328,291,600 | 436,644,000 | 43,664,400 | 808,600,000 | 10,000,000 | 70,860,000 | 80,860,000 | 80,860,000 | 80,860,000 | 80,860,000 | 80,860,000 | 80,860,000 | 242,580,000 |
| | | | 8~9층 | 4 | 331,702,000 | 441,180,000 | 44,118,000 | 817,000,000 | 10,000,000 | 7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81,700,000 | 245,100,000 |
| | | | 10~11층 | 4 | 335,071,800 | 445,662,000 | 44,566,200 | 825,300,000 | 10,000,000 | 7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82,530,000 | 247,590,000 |
| | | | 12~13층 | 4 | 338,441,600 | 450,144,000 | 45,014,400 | 833,600,000 | 10,000,000 | 73,360,000 | 83,360,000 | 83,360,000 | 83,360,000 | 83,360,000 | 83,360,000 | 83,360,000 | 250,080,000 |
| | | | 14~15층 | 4 | 341,852,000 | 454,680,000 | 45,468,000 | 842,000,000 | 10,000,000 | 7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84,200,000 | 252,600,000 |
| | | | 16~17층 | 4 | 345,221,800 | 459,162,000 | 45,916,200 | 850,300,000 | 10,000,000 | 75,030,000 | 85,030,000 | 85,030,000 | 85,030,000 | 85,030,000 | 85,030,000 | 85,030,000 | 255,090,000 |
| | | | 18~19층 | 4 | 348,632,200 | 463,698,000 | 46,369,800 | 858,700,000 | 10,000,000 | 75,870,000 | 85,870,000 | 85,870,000 | 85,870,000 | 85,870,000 | 85,870,000 | 85,870,000 | 257,610,000 |
| | | | 21~24층 | 8 | 355,371,800 | 472,662,000 | 47,266,200 | 875,300,000 | 10,000,000 | 77,530,000 | 87,530,000 | 87,530,000 | 87,530,000 | 87,530,000 | 87,530,000 | 87,530,000 | 262,590,000 |
| | | | 25~28층 | 8 | 358,782,200 | 477,198,000 | 47,719,800 | 883,700,000 | 10,000,000 | 78,370,000 | 88,370,000 | 88,370,000 | 88,370,000 | 88,370,000 | 88,370,000 | 88,370,000 | 265,110,000 |
| | | | 29~32층 | 8 | 362,152,000 | 481,680,000 | 48,168,000 | 892,000,000 | 10,000,000 | 7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89,200,000 | 267,600,000 |
| | | | 33~36층 | 8 | 365,521,800 | 486,162,000 | 48,616,200 | 900,300,000 | 10,000,000 | 80,030,000 | 90,030,000 | 90,030,000 | 90,030,000 | 90,030,000 | 90,030,000 | 90,030,000 | 270,090,000 |
| | | | 최상층 | 2 | 368,932,200 | 490,698,000 | 49,069,800 | 908,700,000 | 10,000,000 | 80,870,000 | 90,870,000 | 90,870,000 | 90,870,000 | 90,870,000 | 90,870,000 | 90,870,000 | 272,610,000 |
| | | 102동3호<br>103동3호 | 2층 | 2 | 297,232,600 | 395,334,000 | 39,533,400 | 732,100,000 | 10,000,000 | 63,210,000 | 73,210,000 | 73,210,000 | 73,210,000 | 73,210,000 | 73,210,000 | 73,210,000 | 219,630,000 |
| | | | 3층 | 2 | 300,440,000 | 399,600,000 | 39,960,000 | 740,000,000 | 10,000,000 | 6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74,000,000 | 222,000,000 |
| | | | 4층 | 2 | 303,688,000 | 403,920,000 | 40,392,000 | 748,000,000 | 10,000,000 | 6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74,800,000 | 224,400,000 |
| | | | 5층 | 2 | 306,936,000 | 408,240,000 | 40,824,000 | 756,000,000 | 10,000,000 | 6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226,800,000 |
| | | | 6~7층 | 4 | 313,391,400 | 416,826,000 | 41,682,600 | 771,900,000 | 10,000,000 | 67,190,000 | 77,190,000 | 77,190,000 | 77,190,000 | 77,190,000 | 77,190,000 | 77,190,000 | 231,570,000 |
| | | | 8~9층 | 4 | 316,598,800 | 421,092,000 | 42,109,200 | 779,800,000 | 10,000,000 | 6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77,980,000 | 233,940,000 |
| | | | 10~11층 | 4 | 319,846,800 | 425,412,000 | 42,541,200 | 787,800,000 | 10,000,000 | 68,780,000 | 78,780,000 | 78,780,000 | 78,780,000 | 78,780,000 | 78,780,000 | 78,780,000 | 236,340,000 |
| | | | 12~13층 | 4 | 323,094,800 | 429,732,000 | 42,973,200 | 795,800,000 | 10,000,000 | 69,580,000 | 79,580,000 | 79,580,000 | 79,580,000 | 79,580,000 | 79,580,000 | 79,580,000 | 238,740,000 |
| | | | 14~15층 | 4 | 326,302,200 | 433,998,000 | 43,399,800 | 803,700,000 | 10,000,000 | 70,370,000 | 80,370,000 | 80,370,000 | 80,370,000 | 80,370,000 | 80,370,000 | 80,370,000 | 241,110,000 |
| | | | 16~17층 | 4 | 329,550,200 | 438,318,000 | 43,831,800 | 811,700,000 | 10,000,000 | 71,170,000 | 81,170,000 | 81,170,000 | 81,170,000 | 81,170,000 | 81,170,000 | 81,170,000 | 243,510,000 |
| | | | 18~19층 | 4 | 332,757,600 | 442,584,000 | 44,258,400 | 819,600,000 | 10,000,000 | 71,960,000 | 81,960,000 | 81,960,000 | 81,960,000 | 81,960,000 | 81,960,000 | 81,960,000 | 245,880,000 |
| | | | 21~24층 | 8 | 339,213,000 | 451,170,000 | 45,117,000 | 835,500,000 | 10,000,000 | 73,550,000 | 83,550,000 | 83,550,000 | 83,550,000 | 83,550,000 | 83,550,000 | 83,550,000 | 250,650,000 |
| | | | 25~28층 | 8 | 342,461,000 | 455,490,000 | 45,549,000 | 843,500,000 | 10,000,000 | 74,350,000 | 84,350,000 | 84,350,000 | 84,350,000 | 84,350,000 | 84,350,000 | 84,350,000 | 253,050,000 |
| | | | 29~32층 | 8 | 345,709,000 | 459,810,000 | 45,981,000 | 851,500,000 | 10,000,000 | 75,150,000 | 85,150,000 | 85,150,000 | 85,150,000 | 85,150,000 | 85,150,000 | 85,150,000 | 255,450,000 |
| | | | 33~36층 | 8 | 348,916,400 | 464,076,000 | 46,407,600 | 859,400,000 | 10,000,000 | 75,940,000 | 85,940,000 | 85,940,000 | 85,940,000 | 85,940,000 | 85,940,000 | 85,940,000 | 257,820,000 |
| | | | 최상층 | 2 | 352,164,400 | 468,396,000 | 46,839,600 | 867,400,000 | 10,000,000 | 76,740,000 | 86,740,000 | 86,740,000 | 86,740,000 | 86,740,000 | 86,740,000 | 86,740,000 | 260,220,000 |
| 4 | 84B | 101동2호 | 2층 | 1 | 298,897,200 | 397,548,000 | 39,754,800 | 736,200,000 | 10,000,000 | 63,620,000 | 73,620,000 | 73,620,000 | 73,620,000 | 73,620,000 | 73,620,000 | 73,620,000 | 220,860,000 |
| | | | 3층 | 1 | 302,145,200 | 401,868,000 | 40,186,800 | 744,200,000 | 10,000,000 | 64,420,000 | 74,420,000 | 74,420,000 | 74,420,000 | 74,420,000 | 74,420,000 | 74,420,000 | 223,260,000 |
| | | | 4층 | 1 | 305,393,200 | 406,188,000 | 40,618,800 | 752,200,000 | 10,000,000 | 65,220,000 | 75,220,000 | 75,220,000 | 75,220,000 | 75,220,000 | 75,220,000 | 75,220,000 | 225,660,000 |
| | | | 5층 | 1 | 308,641,200 | 410,508,000 | 41,050,800 | 760,200,000 | 10,000,000 | 66,020,000 | 76,020,000 | 76,020,000 | 76,020,000 | 76,020,000 | 76,020,000 | 76,020,000 | 228,060,000 |
| | | | 6~7층 | 2 | 315,177,800 | 419,202,000 | 41,920,200 | 776,300,000 | 10,000,000 | 67,630,000 | 77,630,000 | 77,630,000 | 77,630,000 | 77,630,000 | 77,630,000 | 77,630,000 | 232,890,000 |
| | | | 8~9층 | 2 | 318,425,800 | 423,522,000 | 42,352,200 | 784,300,000 | 10,000,000 | 68,430,000 | 78,430,000 | 78,430,000 | 78,430,000 | 78,430,000 | 78,430,000 | 78,430,000 | 235,290,000 |
| | | | 10~11층 | 2 | 321,673,800 | 427,842,000 | 42,784,200 | 792,300,000 | 10,000,000 | 69,230,000 | 79,230,000 | 79,230,000 | 79,230,000 | 79,230,000 | 79,230,000 | 79,230,000 | 237,690,000 |
| | | | 12~13층 | 2 | 324,921,800 | 432,162,000 | 43,216,200 | 800,300,000 | 10,000,000 | 7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240,090,000 |
| | | | 14~15층 | 2 | 328,169,800 | 436,482,000 | 43,648,200 | 808,300,000 | 10,000,000 | 70,830,000 | 80,830,000 | 80,830,000 | 80,830,000 | 80,830,000 | 80,830,000 | 80,830,000 | 242,490,000 |

| | | | | | | | | | | | | | | | | |
|---|---|---|---|---|---|---|---|---|---|---|---|---|---|---|---|---|
| | | | 16~17층 | 2 | 331,417,800 | 440,802,000 | 44,080,200 | 816,300,000 | 10,000,000 | 71,630,000 | 81,630,000 | 81,630,000 | 81,630,000 | 81,630,000 | 81,630,000 | 81,630,000 | 244,890,000 |
| | | | 18~19층 | 2 | 334,665,800 | 445,122,000 | 44,512,200 | 824,300,000 | 10,000,000 | 72,430,000 | 82,430,000 | 82,430,000 | 82,430,000 | 82,430,000 | 82,430,000 | 82,430,000 | 247,290,000 |
| | | | 21~24층 | 4 | 341,161,800 | 453,762,000 | 45,376,200 | 840,300,000 | 10,000,000 | 74,030,000 | 84,030,000 | 84,030,000 | 84,030,000 | 84,030,000 | 84,030,000 | 84,030,000 | 252,090,000 |
| | | | 25~28층 | 4 | 344,409,800 | 458,082,000 | 45,808,200 | 848,300,000 | 10,000,000 | 74,830,000 | 84,830,000 | 84,830,000 | 84,830,000 | 84,830,000 | 84,830,000 | 84,830,000 | 254,490,000 |
| | | | 29~32층 | 4 | 347,657,800 | 462,402,000 | 46,240,200 | 856,300,000 | 10,000,000 | 75,630,000 | 85,630,000 | 85,630,000 | 85,630,000 | 85,630,000 | 85,630,000 | 85,630,000 | 256,890,000 |
| | | | 33~36층 | 4 | 350,905,800 | 466,722,000 | 46,672,200 | 864,300,000 | 10,000,000 | 76,430,000 | 86,430,000 | 86,430,000 | 86,430,000 | 86,430,000 | 86,430,000 | 86,430,000 | 259,290,000 |
| | | | 최상층 | 1 | 354,153,800 | 471,042,000 | 47,104,200 | 872,300,000 | 10,000,000 | 77,230,000 | 87,230,000 | 87,230,000 | 87,230,000 | 87,230,000 | 87,230,000 | 87,230,000 | 261,690,000 |
| | | 102동2호<br>103동2호 | 1층 | 2 | 298,369,400 | 396,846,000 | 39,684,600 | 734,900,000 | 10,000,000 | 63,490,000 | 73,490,000 | 73,490,000 | 73,490,000 | 73,490,000 | 73,490,000 | 73,490,000 | 220,470,000 |
| | | | 2층 | 2 | 305,027,800 | 405,702,000 | 40,570,200 | 751,300,000 | 10,000,000 | 65,130,000 | 75,130,000 | 75,130,000 | 75,130,000 | 75,130,000 | 75,130,000 | 75,130,000 | 225,390,000 |
| | | | 3층 | 2 | 308,316,400 | 410,076,000 | 41,007,600 | 759,400,000 | 10,000,000 | 6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75,940,000 | 227,820,000 |
| | | | 4층 | 2 | 311,645,600 | 414,504,000 | 41,450,400 | 767,600,000 | 10,000,000 | 66,760,000 | 76,760,000 | 76,760,000 | 76,760,000 | 76,760,000 | 76,760,000 | 76,760,000 | 230,280,000 |
| | | | 5층 | 2 | 314,974,800 | 418,932,000 | 41,893,200 | 775,800,000 | 10,000,000 | 67,580,000 | 77,580,000 | 77,580,000 | 77,580,000 | 77,580,000 | 77,580,000 | 77,580,000 | 232,740,000 |
| | | | 6~7층 | 4 | 321,592,600 | 427,734,000 | 42,773,400 | 792,100,000 | 10,000,000 | 69,210,000 | 79,210,000 | 79,210,000 | 79,210,000 | 79,210,000 | 79,210,000 | 79,210,000 | 237,630,000 |
| | | | 8~9층 | 4 | 324,921,800 | 432,162,000 | 43,216,200 | 800,300,000 | 10,000,000 | 7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80,030,000 | 240,090,000 |
| | | | 10~11층 | 4 | 328,210,400 | 436,536,000 | 43,653,600 | 808,400,000 | 10,000,000 | 70,840,000 | 80,840,000 | 80,840,000 | 80,840,000 | 80,840,000 | 80,840,000 | 80,840,000 | 242,520,000 |
| | | | 12~13층 | 4 | 331,539,600 | 440,964,000 | 44,096,400 | 816,600,000 | 10,000,000 | 71,660,000 | 81,660,000 | 81,660,000 | 81,660,000 | 81,660,000 | 81,660,000 | 81,660,000 | 244,980,000 |
| | | | 14~15층 | 4 | 334,868,800 | 445,392,000 | 44,539,200 | 824,800,000 | 10,000,000 | 72,480,000 | 82,480,000 | 82,480,000 | 82,480,000 | 82,480,000 | 82,480,000 | 82,480,000 | 247,440,000 |
| | | | 16~17층 | 4 | 338,157,400 | 449,766,000 | 44,976,600 | 832,900,000 | 10,000,000 | 73,290,000 | 83,290,000 | 83,290,000 | 83,290,000 | 83,290,000 | 83,290,000 | 83,290,000 | 249,870,000 |
| | | | 18~19층 | 4 | 341,486,600 | 454,194,000 | 45,419,400 | 841,100,000 | 10,000,000 | 74,110,000 | 84,110,000 | 84,110,000 | 84,110,000 | 84,110,000 | 84,110,000 | 84,110,000 | 252,330,000 |
| | | | 21~24층 | 8 | 348,104,400 | 462,996,000 | 46,299,600 | 857,400,000 | 10,000,000 | 75,740,000 | 85,740,000 | 85,740,000 | 85,740,000 | 85,740,000 | 85,740,000 | 85,740,000 | 257,220,000 |
| | | | 25~28층 | 8 | 351,433,600 | 467,424,000 | 46,742,400 | 865,600,000 | 10,000,000 | 76,560,000 | 86,560,000 | 86,560,000 | 86,560,000 | 86,560,000 | 86,560,000 | 86,560,000 | 259,680,000 |
| | | | 29~32층 | 8 | 354,762,800 | 471,852,000 | 47,185,200 | 873,800,000 | 10,000,000 | 77,380,000 | 87,380,000 | 87,380,000 | 87,380,000 | 87,380,000 | 87,380,000 | 87,380,000 | 262,140,000 |
| | | | 33~36층 | 8 | 358,051,400 | 476,226,000 | 47,622,600 | 881,900,000 | 10,000,000 | 78,190,000 | 88,190,000 | 88,190,000 | 88,190,000 | 88,190,000 | 88,190,000 | 88,190,000 | 264,570,000 |
| | | | 최상층 | 2 | 361,380,600 | 480,654,000 | 48,065,400 | 890,100,000 | 10,000,000 | 79,010,000 | 89,010,000 | 89,010,000 | 89,010,000 | 89,010,000 | 89,010,000 | 89,010,000 | 267,030,000 |

##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 호실 20%를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선정합니다.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2.09.01.)**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동법상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군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장소 |
|---|---|---|
| **청약신청** | **2022년 09월 06일(화) 09:00 ~ 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 앱) |
| **당첨자발표** | **2022년 09월 13일(화) 16:00시 이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 앱) |
| **계약체결** | **2022년 09월 14일(수) ~ 09월 16일(금) (10:00~16:00)** | ▪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견본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8-1번지)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 구 분 | 내 용 |
|---|---|
| **이용안내**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
| **이용방법 및 절차** |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br>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br>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br>※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br>※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 분 | 청약신청금 | 내 용 |
|---|---|---|
| **모든 군 공통** | **3,000,000원**<br>(금삼백만원) |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br>•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신한은행 全지점)**

| 구 분 | 구 비 사 항 | |
|---|---|---|
| **일반** | **본인 신청 시** | • 청약신청서 (신한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table>
<tr><td rowspan="3">공급</td><td></td><td colspan="2">•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br>•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신청자 명의)</td></tr>
<tr><td rowspan="2">제3자<br>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br>(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td><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br>-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br>-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창구에 비치)<br>•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 사업자등록증 1부<br>•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br>※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 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9.0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시행자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접수 마감시간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군별 타입·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군별 2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아래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2022년 09월 13일(화) 16:00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br>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br>※ 스마트폰앱 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당첨자 선정방법** |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하고,<br>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함. |
| **동·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 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기타사항** | • 군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br>「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 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은행(창구)청약자** |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br>•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구분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시간 | 장 소 | 계약금 납부 |
|---|---|---|---|---|
| **정당계약** | **2022.09.14.(수) ~ 22.09.16(금)** | **10:00 ~ 16:00** |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견본주택<br>(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8-1번지)** | 계약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 **예비당첨** | **2022.09.17.(토)** | **10:00 ~ 12:00** | |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은 예비순번에 대로 타입별 동호수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약체결일 오전 10시이전 견본주택 방문 당첨자에 한하여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계약금 1 차 | 신한은행 | 100-035-625976 | 신한자산신탁(주) | **입금 시 동,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br>**(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101-1001 홍길동)** |
| 계약금 2 차/중도금/잔금 | 동 · 호실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계약서 명시) | | |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1차는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신한은행 100-035-625976 신한자산신탁(주)] 납부하여야 함.
- 이후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분양광고상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호실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금융기관, 시공자 등에게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계약시** | 1. 계약금(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br>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터넷 청약시 생략 가능<br>3.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br>4. 인감증명서 2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설계변경 동의용) 본인발급용에 한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설계변경 동의용)<br>/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br>5.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br>7. 주민등록초본 1통 (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br>8. 인지세 전자 수입 인지 |

| | |
|---|---|
| **법인 계약시** | 1. 계약금(무통장 입금증/현금수납 불가)<br>2. 청약신청 접수(영수)증<br>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br>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br>5.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br>6. 법인 등기부등본 1통<br>7. 법인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br>※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br>※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br>※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br>8. 인지세 전자 수입 인지 |
|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 3자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br>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br>2.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br>3.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인장 |
| **공통 사항** | 1. 인지세 납부확인증(전자수입인지)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br>※ 수입인지 구입처<br>-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br>-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자 본인이 구입 후 출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9.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co.kr ,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액의 10%(계약금) 완납시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매도인)가 융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매수인)는 사업주체(매도인)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개인별 대출한도가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매수인)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매수인)에게 있으며, 계약자(매수인)는 분양금액(미납금액, 연체료 포함)을 본인의 부담으로 사업주체(매도인)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사업주체(매도인)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이자는 사업주체(매도인)가 대납하고 입주지정기간 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목적물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매수인)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매수인)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매수인)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매도인)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목적물인도 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매도인)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매수인)는 그 금액을 사업주체(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매수인)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DTI, LTV, DSR, RTI 등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매수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매수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매수인)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매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매수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매수인)가 부담해야 하며, 중도금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매수인)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매수인)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매수인)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매수인)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요구로 분양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매도인)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매수인)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매수인)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계약자(매수인)는 목적물 인도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금액(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포함)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매수인)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자(매수인)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Ⅳ 추가 선택품목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상 추가 선택 품목**

**①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구분 | 타입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공급가 | 부가세 | 합계 | 계약시 | 2023.09.18 | 입주시 |
| 중문 | 3연동 | 61A | 654,545 | 65,455 | 720,000 | 72,000 | 72,000 | 576,000 |
| | 3연동 | 61B | 654,545 | 65,455 | 720,000 | 72,000 | 72,000 | 576,000 |

| | | | | | | | | |
|---|---|---|---|---|---|---|---|---|
| | 스윙 | 76A | 854,545 | 85,455 | 940,000 | 94,000 | 94,000 | 752,000 |
| | 3연동 | 84A | 654,545 | 65,455 | 720,000 | 72,000 | 72,000 | 576,000 |
| | 스윙 | 84B | 854,545 | 85,455 | 940,000 | 94,000 | 94,000 | 752,000 |

**② 거실 간접조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구분 | 타입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공급가 | 부가세 | 합계 | 계약시 | 2023.09.18 | 입주시 |
| 간접조명 | 간접조명 | 61A | 863,636 | 86,364 | 950,000 | 95,000 | 95,000 | 760,000 |
| | | 61B | 1,127,272 | 112,728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 | | 76A | 809,090 | 80,910 | 890,000 | 89,000 | 89,000 | 712,000 |
| | | 84A | 918,181 | 91,819 | 1,010,000 | 101,000 | 101,000 | 808,000 |
| | | 84B | 1,127,272 | 112,728 | 1,240,000 | 124,000 | 124,000 | 992,000 |

**③ 주방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구분 | 타입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공급가 | 부가세 | 합계 | 계약시 | 2023.09.18 | 입주시 |
| 주방가구 및 가전 | 냉장/변온 비스포크 냉장고 + 톨장 특화 | 61A | 1,672,727 | 167,273 | 1,840,000 | 184,000 | 184,000 | 1,472,000 |
| | | 61B | 1,672,727 | 167,273 | 1,840,000 | 184,000 | 184,000 | 1,472,000 |
| | | 76A | 1,827,272 | 182,728 | 2,010,000 | 201,000 | 201,000 | 1,608,000 |
| | 냉장/변온/김치 비스포크 냉장고 | 84A | 1,827,272 | 182,728 | 2,010,000 | 201,000 | 201,000 | 1,608,000 |
| | 냉장/변온 비스포크 냉장고 + 톨장 특화 | 84A | 1,863,636 | 186,364 | 2,050,000 | 205,000 | 205,000 | 1,640,000 |
| | 냉장/변온/김치 비스포크 냉장고 | 84B | 1,672,727 | 167,273 | 1,840,000 | 184,000 | 184,000 | 1,472,000 |
| | 냉장/변온 비스포크 냉장고+톨장 특화 | 84B | 1,709,090 | 170,910 | 1,880,000 | 188,000 | 188,000 | 1,504,000 |

**④ 실1(거실) 및 주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구분 | 타입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공급가 | 부가세 | 합계 | 계약시 | 2023.09.18 | 입주시 |
| 실1(거실) 및 주방 | 폴리싱 바닥 타일(600*600) | 61A | 1,181,818 | 118,182 | 1,300,000 | 130,000 | 130,000 | 1,040,000 |
| | | 61B | 1,218,181 | 121,819 | 1,340,000 | 134,000 | 134,000 | 1,072,000 |
| | | 76A | 1,318,181 | 131,819 | 1,450,000 | 145,000 | 145,000 | 1,160,000 |
| | | 84A | 1,409,090 | 140,910 | 1,550,000 | 155,000 | 155,000 | 1,240,000 |
| | | 84B | 1,372,727 | 137,273 | 1,510,000 | 151,000 | 151,000 | 1,208,000 |

⑤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구분 | 타입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10%) | 잔금(80%) |
|---|---|---|---|---|---|---|---|---|
| | | | 공급가 | 부가세 | 합계 | 계약시 | 2023.09.18 | 입주시 |
| 시스템 선반 중문 | 벽판넬 시스템선반 및 3연동 중문 | 61A | 2,436,363 | 243,637 | 2,680,000 | 268,000 | 268,000 | 2,144,000 |
| | 벽판넬 시스템선반 및 3연동 중문 | 61B | 2,172,727 | 217,273 | 2,390,000 | 239,000 | 239,000 | 1,912,000 |
| | 벽판넬 시스템선반 및 1연동 중문 | 76A | 1,700,000 | 170,000 | 1,870,000 | 187,000 | 187,000 | 1,496,000 |
| | 벽판넬 시스템선반 및 3연동 중문 | 84A | 2,136,363 | 213,637 | 2,350,000 | 235,000 | 235,000 | 1,880,000 |
| | 벽판넬 시스템선반 및 3연동 중문 | 84B | 2,136,363 | 213,637 | 2,350,000 | 235,000 | 235,000 | 1,880,000 |

■ **추가선택 품목 납부계좌**

| 구 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계약금** | **신한은행** | **100-036-099250** | **신한자산신탁(주)** | **입금 시 동,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101-1001 홍길동)** |
| **중도금 / 잔금** | **동 · 호실별 개별 가상계좌 부여 (계약서 명시)** | | | |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신한은행, 100-036-099250, 신한자산신탁(주)] 납부하여야 함.
- 이후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분양광고상 추가선택 품목 관리계좌로 입금됨. 개인별 가상계좌는 호실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 옵션품목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선택 옵션품목대금 납부계좌와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계약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옵션 추가선택 시 기존 실거래 신고에 대하여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분양 공급계약서 체결과 별도로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미납할 경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V 기타 계약자 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
-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6년 02월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경비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세대창고, 독서실, 무인택배, 주민회의실, 안내데스크
• 커뮤니티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3~4층에 설치되는 운동시설 및 패밀리 스포츠존은 사업주체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단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이때 권리 이전에 필요한 각종세금 및 비용 등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소유권이관 후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관리비용은 관리단 및 입주민이 부담함을 인지하고 계약하며, 관리단 및 입주민의 소유권이전 거부시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의시설로 제공되는 커뮤니티의 시설물(각종 기구를 포함)은 준공 후 관리단에서 관리하며 추후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유지, 보수 및 교체의 책임 주체는 관리단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을 선착순 온라인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hillstate-centum.co.kr)으로 병행하여 운영 합니다.
- 견본주택 관람 및 계약체결 시 애완동물, 영유아, 유모차의 입장이 제한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 견본주택 관람 및 계약체결 시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차량이용 시 동해선 벡스코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입장인원이 제한 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안내 및 예약 예정)

## VI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층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장식물 등)의 형태와 색채계획 및 커튼월룩 위치, 디자인, 설치범위 등과 문주, 편의 시설물, 안내 시설물,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계획/높이 및 단지 조경(식재포함)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약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자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및 내부에 단차가 있고, 접근 위치에 따라 계단 및 경사로, 옹벽 등이 설치되어 통행 및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 확인 및 견본주택의 모형, 인·허가 도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수영강 및 수변공원과 인접해 있고, 대지 경계에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는 대로 등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 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주변 대지에 다른 건물이 건축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환기, 조망권, 소음 등이 심각할 수 있으니, 해당 호실 및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 및 조업 차량이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등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대에 따라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단지 전면의 생활체육시설은 입주자 전용공간이 아닌 공동시설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북측에 수영강과 연결된 하수관거가 포함된 구거지 및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견본주택 모형에서 해당 위치 및 현장 확인 후 계약하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서측으로 15m도로 및 번영로가 위치하고, 북측에는 과정교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 구역 안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향후 개발 진행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의 북측 과정교와 서측 번영로가 대지경계에서 대략 30m정도 이격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이 단위호실의 층,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진출입로 좌측 코너부 공개공지 일부 구간에 하수관거 구조물이 일부 지하에 존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림강변 e-편한세상 2차에서 수영강으로 진입하는 통로 및 단지내상가, 수영강산책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계획중이며, 개설 여부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104동 전면 데크에는 수변공원과 연결되는 보행통로가 설치되며 레벨차에 따른 램프 등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주변에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외부에 개방된 시설이므로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 임의로 출입을 막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실외기실 및 배기휀룸과 인접한 103동 호실(84A, 84B)과 104동 호실(61A, 61B)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계약전 인지하고 해당 위치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로 도로, 상하수도, 구거지(하수관거 포함),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외부계단 및 근린생활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내 단지 모형 및 인·허가 도면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호실은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층 및 저층 호실은 경관 조명 및 상가 조명, 각종 사인물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부에는 지하, 지상1층 주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 여건(조경, 비상차량 동선, 주차구획 및 동선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주차대수는 총586대 중 오피스텔 537대, 근린생활시설 49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3층 ~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104동 지하1층에 차단기로 주차영역이 구분되어 설치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사용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입주자는 법정주차대수 대비 제공예정이며, 용도별 면적별 주차비를 차등 적용 하였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04동 오피스텔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자와 단지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시설 간에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층에는 필로티 내 주민휴식공간 및 주동 출입구 등이 계획되어 인접호실과 상부층 호실에는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하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건축허가상의 용도별 주차대수와 실사용 면적은 상이하나 전용면적별로 안분된 면적과 지하층 외 층별로 안분된 실사용 면적은 동일하며 주차장 세부 운영방안은 추후 관리단 성립 시 관리단 규약을 적용 합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후 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자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로비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 시공 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일원은 개별난방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초등학생 배치) 해당사업지의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망미초등학교로 초등학생 배치는 부산시교육청 행정과 학생배치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시설로서 오피스텔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나 대한민국 안의 토지(건축물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 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로 지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 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입주AS센터(가칭)을 주차장,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일체비용(임대료,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명칭은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이며,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29번지 일원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사항**

- 견본주택내 건립타입 및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은 승인된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 및 설계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방화문 등)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본 공사 시 동질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 84㎡B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호실 CG 및 공급안내문, 팜플렛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세대는 유상옵션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미선택시 기본형 타입으로 변경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며,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설치 위치, 소방관 진입창의 형태, 크기, 설치 위치 등은 인허가 및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건립타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피난안전구역 층의 제연휀룸, 급기 그릴, 입면 요철 여부 및 옥탑층 제연휀룸, 저수조 등의 구조물, 지하주차장 제연휀룸 및 휀룸용 DA(설비 환기구), 주변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및 그릴, 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공용홀 SIGN 및 이미지 POP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문서를 따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거실/복도, 욕실 벽/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류는 시공성 위해 분절라인 및 패턴은 본 공사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 조명[스포트 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등은 견본주택 연출상 조명이며 본 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가전, 악세사리,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저의 재질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외부창호 밖으로 설치된 조경공간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공시에는 제외 됩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모두 LED제품이 설치되며, 콘센트, 스위치, 전기 통신 분전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도어록 등의 제품사양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내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을 위한 시설로, 본 공사시에는 냉방전용 에어컨이 설치되며 삼성 무풍에어컨(공기청정기능 제외)이 설치됩니다.
- 각 형별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TV,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출입구/ 벽면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등의 대형 가전기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구매,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층 표시, 주동 외관(동출입구,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지붕 장식구조물 등)의 형태, 색채계획 및 커튼월룩의 위치, 디자인, 설치범위 등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DA(설비 환기구), TOP LIGHT, 생활폐기물보관소, 실외기실, 자건거보관대, 포장패턴, 및 소재,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미러세대의 경우 세대마다 창호 및 가구의 열림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입면의 E/V홀 창크기, 문주, 접근로, 창호, 색상, 가구 및 가전의 열림방향, 사양, 손잡이, 단지 내 시설물 등은 실제 시공시 위치, 크기,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 전기 품목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유상옵션 가구의 크기가 사용성과 설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단지내 조경, 바닥포장 등의 마감 및 색상, 패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상가 실외기실 및 배기휀룸이 설치되며 입면 및 창호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전시품 및 디스플레이용품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기된 사업지 인근의 주변환경,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 교통여건, 각종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철도,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은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기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인·허가 및 정부시책,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기된 거리 및 이동시간은 네이버 지도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향후 변경된 부분은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기된 CG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 CG)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픽토그램, 아이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써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 예정 사항은 각종 언론 기사 및 신도시 개발계획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현한 지도상의 도로 및 거리 지하철역, 건물의 위치 등은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변경)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오피스텔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필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에게 고지 할 예정입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층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호실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관련 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도로계획 및 개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는 전층 운행됩니다.(104동은 지하1층 미운행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오피스텔 전용 카드키 또는 출입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구역으로 설정됨.
  - 화재시는 카드키 없이 계단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옥외보안 및 지하, 지상층 CCTV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등은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옥상 및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뢰 설비가 설치되오니 인지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호실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입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102동, 104동에 인접해 설치되며, 인근 호실은 소음, 진동, 차량 불빛, 경광등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받을수 있으며 계약전 반드시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인근에는 재활용품 보관소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 설치되며 인근 호실에는 냄새(악취), 해충, 혐오동물,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디자인(요철계획, 석재마감 등)에 의해 일부호실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관 디자인(색채 및 입면 패턴, 지붕장식구조물, 석재마감, 커튼월룩 마감, 창호형태, 주동출입구 등)은 인허가, 실시설계 및 실시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별로(104동은 일부 공용복도) 배연창 및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크기, 색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문주, 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DA, 제연휀룸, 소화전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지붕층 외부계단 및 제연휀룸의 마감은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호실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구거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호실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변 도로, 주변 건물과 인접한 저층 실의 경우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세대전면 조경수목으로 인해 조망 등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외벽 및 옹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그 외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단지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설비 환기구)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휴게공간, 외부엘리베이터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중 공개공지를 통한 단지 출입구 진입부위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바닥을 포장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 지상 및 지하의 출입구 전면에 구조계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조경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 및 필로티 내부, 주동 출입구 주변에 지하주차장 및 기계, 전기실 등의 급,배기를 위한 D.A가 설치되며, 크기 , 토출구 방향,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호실 및 보행시 소음, 분진, 매연, 진동 등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옥탑 및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li Intensity Scale) **Ⅷ - 0.291g** 임
-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식재계획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 형태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설계에 따라 단위실내에 기둥 및 보의 크기,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가구배치 등 실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 호실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설비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견본주택에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행동선,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에 따라 본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는 관리주체의 관리방침에 따라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103동 지하1층에 있으며, 104동 근린생활시설 3층, 4층에 커뮤니티시설(휘트니스센터, 패밀리 스포츠존)이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시설 이용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동하부에 (101동, 102동 :지하1~2층, 103동, 104동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시설 이용에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의 크기, 위치, 수량은 실시설계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창고의 크기는 전용 면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소방관계기준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및 호별창고에서 103동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비상시에만 열리는 방화문이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소방용 장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형 및 타입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허가도면상의 건물 입면의 재료 마감 및 디자인은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 민원에 의해 임의로 재료마감 및 디자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설계 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호실은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오피스텔 전유부분 이외의 공용부 및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화재시 소방차의 비상진입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식재, 차폐시설, 포장 계획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발코니가 법적으로 설치될 수 없는 바, 거주성능과 편의 등을 위한 다용도실,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사다리 등의 공간은 모두 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각 단위호실(2~24층에 해당) 안방 다용도실의 창호는 화재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분활규격, 형태, 위치 등이 상이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1A타입은 미설치, 61B 타입은 드레스룸에 설치, 103동 84A 및 84B 타입은 다용도실2 에 설치)
- 단위호실 거실창에는 화재시 필요한 배연창이 설치되며, 분할규격, 형태, 위치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심의에 따른 각 단위호실에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호실내 실간벽은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유의사항**
- 동일한 평형 및 타입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씽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내 욕실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별도의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호실별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호실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실별 복도에 면한 벽체 하부(복도측)에는 계량기함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접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호실 현관문 및 타입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 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 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내 설치되는 타일류,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같은 타입 일지라도 타입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호실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실별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등의 설치 위치와 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로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중 하이오티(Hi-oT) 서비스(현대오토에버)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호실 내부 무선 Wi-Fi용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호실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타입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호실 별,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호실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인조대리석 및 석재/타일 자재의 경우 제조과정에 따라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입주자의 실내 생활 환경(호실 환기 빈도 등)에 따라 창호 및 마감재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축법」및「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수도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101동 남측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탈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104동 근린생활 시설 상부에 근린생활 시설에 사용하는 탈취기 및 배기 설비가 입점자 공사분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냄새, 소음, 진동, 연무,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실외기가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저하 및 소음 등으로 환경권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기계실포함 저수조 등이 103동 104동 하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실은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오피스텔 옥상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시 인접한 호실에 소음, 진동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어 계약체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20층에는 중간기계실(제연휀룸, 소화수조, 펌프 등)과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인접한 호실에는 소음, 진동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 및 실시공시 피난안전구역층의 층고, 급기구 형태,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실 등) 문 및 창호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제품이 시공되며, 삼성 무풍에어컨(공기청정기능 제외)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도 있으며,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하며 별도의 IoT, 홈네트워크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인접 호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화장실 천장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호실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내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배관은 상부 호실용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의 설치 위치,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1의 우수배관 위치는 마감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2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호실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의 렌지 후드 환기시설은 실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설비인 바닥열 급기장비가 다용도실 1 또는 다용도실 2 상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 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호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의 필터는 헤파필터로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 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방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등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비 난방구역으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호실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층 다용도실 1에는 소방법에 의해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계절창고에는 별도의 제습기가 설치되지 아니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호실별로 다용도실 1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상부호실이 하부로 피난 통로로 이용되며,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난사다리의 사양은 마감 및 시공성 고려하여 설치 되며 피난사다리 사양 관련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본 공급 시설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센트럴시티,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이하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위탁사 ㈜센트럴시티이며, 수탁사 신한자산신탁(주)는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주)는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 및 수탁사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 일체의 책임 및 의무는 위탁사 겸 수익자((주)센트럴시티)에게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신한자산신탁(주)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손해배상 책임 포함)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위탁사 ㈜센트럴시티에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분양대행사수수료, 대출, 중도금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위탁사 ㈜센트럴시티와 수탁사 신한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금액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사 신한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사인 ㈜센트럴시티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본 사업의 전체 분양 관련 금원은 신한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관리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의 모든 내용에 우선 적용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구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 | | 비고 |
|---|---|---|---|---|
| 건축 | 주식회사 아이에스종합건축사무소 | 740,608,000 | 1,408,000,000 | 부가세별도 |
| 토목 | | 352,000,000 | | |
| 기계 | | 315,392,000 | | |
| 전기 | 주식회사 와이케이엔지니어링 | 129,000,000 | 600,000,000 | |
| 소방 | | 441,000,000 | | |
| 통신 | | 30,000,000 | | |

■ **사업관계자 및 시공회사**

| 구 분 | 회 사 명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시행위탁자 |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5, 1402호<br>(중동,센트럴메디타워) | 180111-0835215 |
| 시행수탁자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br>(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 110111-3543801 |
|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110111-2153015 |
| 분양대행사 | 지우알엔씨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4404호<br>(우동, 센텀리더스마크) | 180111-0652867 |
| 감 리 사 | 주식회사 아이에스종합건축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1, 6층<br>(연산동, BYC연산사옥) | 180111-0670421 |
| | 주식회사 와이케이엔지니어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86, 3층<br>(양정동, 셀렉스 빌딩) | 180111-1265495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자 : 신한자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61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목·용도·규모
  ①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29번지 일원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 3층 ~ 지상 최고 37층 4개동 (오피스텔 : 지하3층 ~ 지상 최고 37층, 4개동 447실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 지상 7층)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확보(국유재산 관리처분 승인이 되어 토지분할(망미동 1121번지) 진행중)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등기

■ **현장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1129번지 일원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118-1번지
■ **분양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entum.co.kr
■ **분양문의** : ☎ 051-731-1113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상 오류, 오기 등 분양광고 자체가 관계법령과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위치도
강동초등학교
벡스코역
3번출구
동해
8번출구
힐스테이트 센텀 더퍼스트
견본주택
벡스코역
(시립미술관)
Homeplus
BEXCO
트럼프
월드센텀
2번출구
센텀시티역
(벡스코 · 신세계)
롯데
백화점
견본주택 : 해운대구 우동 1118-1번지
(센텀시티역 2번출구 도보 6분)